

2026년도 제2회 상시계약집배원(공무직)채용 공고

김제우체국에서 우편물 집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상시계약집배원(공무직)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31일
김제우체국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채용직종	근무예정우체국	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내용	비고
상시계약집배원 (공무직)	김제우체국 우편물류과	1명	- 소포배달업무 - 관련 부대업무	

2 근로조건

○ 신분 : 공무직 근로자(비공무원)

*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하며**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 보수

- 기본급 : 최저임금 기준 반영('26년도 기준 상시집배원 2,016,880원)
 - 수당 : 가족수당, 근속수당, 운전수당, 명절보로금, 정액급식비 등
 - 실적수당 : 초과근무수당(시간외, 휴일), 상시출장여비 등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맞춤형 복지제도 등
- 다.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휴게시간 :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 우체국 사정에 따라 근무일(월~금 또는 화~토)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

라. 휴가 : 연차 유급휴가, 공무 유급휴가, 특별 유급휴가 등

마. 업무 특성 :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가 필요하며, 일평균 500여통 이상(최번기 60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과 2kg 내외(최고30kg)의 다량의 소포를 집배차량에 적재한 후 직접 운전·배달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

3 응시 자격

가. 응시연령 : 최종시험일 현재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62조(근무상한 연령)

• 공무원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

•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

* 단, 관리 규정 제62조3항에 따라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

나. 지역제한 : 공고일 기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다. 자격증 :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와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동시 소지(최종시험일 현재)하고 운전가능한 자(수동변속기차량 운전 가능자)

※ 참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중 조건J(다륜형)는 이륜차를 운전할 수 없는 한정면허임

라. 응시자격 제한

○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 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

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

4 서류전형시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 단, 법정 가점은 법률에 따라 전형별로 가점 부여

나. 정보화 관련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인터넷정보관리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발행분 한)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기술자격(ITQ)

※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가’ 항의 요건을 갖춘자에 한하며 ‘정보화자격증’ 과 ‘취업 지원대상자’ 등의 심사항목에 2개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 1개의 자격만을 반영함.

다. 근무경력

- 집배 업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우체국소포원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재택·통상·소포위탁배달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다량 화물 운송 제외)

※ 경력증명서 제출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는 4대 보험(고용보험 등) 중 1개의 자격득실 내역서와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자격 취득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의 경력을 인정

5 시험 방법

채용분야	시험단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제3차 시험
상시계약집배원 (공무직)		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하**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 ※ 서류전형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우대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합격자 결정**
 -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 채점기준

배점	심사항목	자격요건 만족도	직무관련 경력	무사고 경력	자기소개서 충실·성실성	정보화 자격증	취업지원 대상자 등
100점		15점	30점	30점	10점	10점	5점

※ 취업지원 대상자 등은 「4. 우대요건」가항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며, 정보화 자격증과 '취업 지원 대상자 등'의 심사항목에 2개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각각 1개의 자격만 반영함

나. 제2차 시험 : 실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체력 측정
 - 체력 측정(3종목) :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소포상자 이동하기
 - 점정기준표 : 붙임 참조
 - ※ 실기시험(체력측정)에서 탈락할 경우 면접시험에 참가할 수 없음
- 체력 검정 면제 : 「국민체력 100」 인증서(3등급 이상) 제출자
 - ※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무료), 「국민체력 100」인증서는 **실기시험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취득분을 실기시험 전까지** 제출할 경우 체력검정 면제
 - ※ 실기시험(체력 검정)에서 탈락할 경우 면접시험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요소 :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과 성실성, 창의력·의지력과 발전 가능성 등

※ 실기시험에서 탈락한 경우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유의사항

- 면접시험대상자는 응시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중 1)을 지참한 후 면접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면접대기장소에 입장

※ 응시표는 면접 당일 대기 장소에서 배부

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 중 면접점수 상위 순위자부터 채용목표 인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6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07.31.(금) ~ 08.07.(금)	'26.08.03.(월) ~ 08.07.(금)	'26.08.12.(수)	'26.08.19.(수)	'26.08.24.(월)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 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김제우채국 홈페이지, 나라일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채용 안내 홈페이지에 게시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 ※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채용계약 당일 퇴직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나. 접수기간 : 2026. 8. 3.(월) ~ 2026. 8. 7.(금)

다. 접수방법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시 문의사항은 고용24콜센터(1577-7114, 1544-4430)문의

※ 최종 접수 여부는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 관리 - 알선/입사지원 내역에서 반드시 확인,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라. 구비서류 첨부 : 온라인 접수시 PDF · JPG 파일(성명_서류명) 첨부

또는 등기우편 제출(온라인 첨부가 어려울 경우)

※ 등기우편 제출

- 접수처 : (54383) 김제시 중앙로 85, 김제우체국 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우편 제출은 마감일 소인분(익일특급 등기우편)까지 유효함

-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응시원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함**

* 구비서류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상시계약집배원 응시원서 구비서류 재중** 표시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예정

※ 채용부서의 접수 확인 답신이 없는 경우, 기한 내 채용부서를 통해 접수완료 여부 확인

마. 유의사항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제출서류

가.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에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08. 24. ~ '26. 09. 07.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경력, 자격증 등)은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나.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비 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원서 1부	○ 별지서식 제2호 (온라인 접수시 제출 불필요)
	이력서 1부	○ 별지서식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서식 제4호
	운전경력증명서 ¹⁾ 1부	○ 공고일 이후 발급 (전체경력, 취득일자 반드시 표기)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²⁾ 1부 (※ 최종 합격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최종 합격자 한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전체포함' 선택으로 발급)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 별지서식 제5호
	체력검정 응시 동의서약서 1부	○ 별지서식 제6호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함)	경력(재직) 증명서 ³⁾ 1부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국민체력100' 인증서 ⁴⁾ 1부	○ 3등급 이상 인정
	취업지원대상자 우대요건 관련 서류 ⁵⁾ 1부	○ 「4. 우대요건」 '가'항의 요건

- 1) 운전면허 경력에 보유하고 있는 면허 모두 표시(**반드시 취득일자 표시**) 면허취득일 이후 교통사고 교통위반이 전부 표시 되도록 조회된 증명서 제출(**반드시 전체경력으로 발급**)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터넷 발급)
 - 2) **주소변동 이력 표시**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하여 발급,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록되도록 발급 및 제출하고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초본교부 신청시 신청내용을 **전체포함**으로 선택하여 발급)
 - 3) 경력사실이 확인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 포함, 경력검증 시 미비할 경우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누락(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불합격될 수 있으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류전형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사항(해당자에 한함)**
 - ✓ **필수 1 : 4대 보험(고용보험 등) 중 1개 보험의 자격 득실 내역 1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확인서)
 - ✓ **필수 2 :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 증명 1부**
 - 4)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에서 체력측정 후 발급하는 인증서(무료)로 **인증일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인 인증서(3등급이상)에 한함**
 - 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제출서류 안내 참고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9 안내 및 참고사항

- 가.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김제우채국 홈페이지, 집배원채용안내, 나라일터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나.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결격사유)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김제우채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김제우채국 채용 담당 이메일(lseulgil@korea.kr)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붙임8 서식】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6.8.24.\(최종합격자 발표일\)~2026.9.7.](#)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라. 상시계약집배원은 비공무원이며, 공무원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 수습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마. 상시계약집배원 근무경력(3개월 이상)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

바.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같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새로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 할 수 있음

사.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 실기시험 실시 중에 발생하는 인적 피해 및 기타 각종 사고는 일체 응시자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에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내용은 김제우체국 지원과 채용담당(063-542-000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